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일반대학원 내규」(이하 ″본 내규“라 한다)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학칙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제3조(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①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 캠퍼스별로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해당 캠퍼스 부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대학원장, 해당 캠퍼스 부대학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명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심의
2.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기타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학사자문위원회

제5조(학사자문위원회)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과 대학원 발전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로 학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학사자문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장은 학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대학원장은 간사가 된다.
③ 학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대학원장은 필요시 학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사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행정기관

제1절 대학원장

제8조(임명)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대학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권한과 책무) 대학원장은 본 대학원을 대표하고, 본 대학원의 업무 전반을 통할하며,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제2절 부대학원장

제11조(지위) 대학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별로 부대학원장을 둘 수 있다.

제12조(자격) 부대학원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제13조(임명) 부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부대학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권한과 책임) 부대학원장은 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원 학사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대학원장이 장기출장 등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학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학과장

제16조(지위) 대학원장은 학과별로 학과장을 둘 수 있다.

제17조(자격) 학과장은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18조(임기) 학과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역할) ① 학과장은 전공강의와 학생지도 및 해당 학과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학과장은 전항 소정의 업무에 관해 학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절 행정실

제20조(행정실의 구성) ① 대학원의 학사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설치한다.

② 행정실에는 실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 행정실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21조(행정실장) ①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한다.
② 행정실장은 행정실을 관장하고, 대학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대학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집행한다.

제5장 장학금

제22조(지급기준) 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2. 수혜요건이 정해진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3.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B(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금의 종류·지급대상 및 장학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단, 캠퍼스별로 장학 세부종류 및 선발·지급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

제2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대학원 또는 소속 단과대학(학과)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등록 전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처리
2. 등록 후 : 학생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제25조(장학생 선정절차) 장학생 선정은 학과장 또는 해당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선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석·박사 통합과정

제26조(정의)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27조(설치대상) 통합과정은 현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에서 통합과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정원) 통합과정의 정원은 각 학과의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이내로 한다.

제29조(학사관리) 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각 학과는 석사와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과정의 교과과정 이수,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등 제반 학사에 관한 사항은 박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다만,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제7장 외국인학생

제30조(입학전형) ①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② 수학능력은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을 통하여 심사하고, 재정능력은 입학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31조(입학전형 시기) 외국인에 대한 입학전형은 수시로 시행한다.

제32조(한국어 구사능력)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TOPIK 4급 이상 취득자
2.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3.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이상 수학한 자
4.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②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영어트랙으로 입학한 외국인은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강좌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입학 후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증명서를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 캠퍼스는 입학전형 시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입증될 경우, 지원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본교에 입학을 원하는 외국인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원서
2. 대학(원) 학위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학위인증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최종학교 지도교수 추천서
5.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6. 학업계획서
7. 자기소개서
8. 작품 또는 성과물(예·체능계에 한함)
9. 본인 및 직계가족 관계증명서(번역공증본)
10.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미화$20,000 상당액 이상을 입학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증명서
11. 호구부(중국인 지원자에 한함) 및 부모 신분증 사본
12.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34조(외국인 등록 등) ① 본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1. 입학허가 후 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2.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6조(외국인 학생의 보험가입 의무) ①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국인학생의 건강검진 의무) 외국인학생은 입학 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한다.

제8장 편입학

제38조(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본교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39조(구비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칙 시행세칙 제4조 각 호의 서류와 전적 대학원의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전형방법) 편입학 전형방법은 학칙 시행세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41조(학점인정 등) 편입한 자는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석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9장 재입학

제42조(재입학) ① 학칙 제14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19조에 의한 재입학 승인 대상자는 등록기간 안에 등록해야 하며, 재입학한 학기에 미등록으로 인해 다시 제적될 경우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 입학 후 최소 1개 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0장 타 대학교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제43조(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학점 취득)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은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이하 “교류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교류대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외에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이 대학원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3.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5.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6.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7.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8.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9. 국방대학교
10.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1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12.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13. 동국대학교 대학원
14. 부산대학교 대학원
15. 제주대학교 대학원
16. 한신대학교 대학원
17. 삼육대학교 대학원
18.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19. 광운대학교 대학원
20.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21. 서경대학교 대학원
2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3. 상명대학교 대학원
24. 서울대학교 대학원
2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6. 명지대학교 대학원
27. 본교와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된 외국대학 대학원
28.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대학원

③ 교류대학원과의 학점교류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 교류대학원과의 학점교류협정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지할 수 있다.

제44조(취득학점 수)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통합과정은 18학점 이내로 하되,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45조(수강절차) 교류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수강할 교류대학원과 강좌를 결정하고,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해당강좌 담당교수,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장 연구등록

제46조(용어의 정의) “연구등록”은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7조(등록절차)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구등록생의 신분을 취득한다. 다만,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신분 등) ①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 실험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49조(연구등록금) 연구등록금은 수료 후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기 등록금의 10%를 납부한다.

제50조(장학금) 연구등록을 한 자에게 본 내규 제5장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장 등록금 분할납부 및 등록금 등의 반환

제51조(등록금의 분할납부) ① 등록대상자는 소정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이하 “분할납부”라 한다)할 수 있다.
③ 분할납부는 해당 학기 등록금 총액을 3회까지 분할하여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분할납부 대상) ① 분할납부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제4기까지,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2기부터 8기까지의 재학생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 신입학자, 편입학자, 재입학자는 분할납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3조(분할납부 절차)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분할납부 학생의 신분 등) ① 본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한 학생은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는다.
② 분할납부 할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한다.
③ 분할납부 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입학금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을 반환한다.
1. 입학금이 과오납 된 경우
2. 입학 전까지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56조(등록금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3]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57조(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 ① 휴학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받거나, 대학원장이 정한 기간(학기 개시일부터 21일까지)에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에 휴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58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①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0~3학점을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2.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점당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고 추가학점을 이수할 시 해당 학위과정 등록금의 20%를 납부한다.

제13장 학위청구논문의 공개발표

제59조(공개발표의 실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그 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발표 신청은 소정양식의 공개발표 신청서에 논문지도교수 승인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학과와 대학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④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⑤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60조(공개발표의 합격) ① 공개발표의 결과는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판정하되 그 기준은 각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② 공개발표 합격 결과는 공개발표를 한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5개 학기 동안 유효하다.

제61조(결과 제출) 논문지도교수는 공개발표 심사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학위청구논문의 심사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본 내규 제6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4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타 학과 전임교원 1인과 타 대학 전임교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에는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타 학과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학과에서 따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7조(학위청구논문의 작성)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게재 완료 후 30일 이내 해당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별쇄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2항, 제3항과 학과 내규를 따른다.
⑤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3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⑦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장 논문지도교수의 배정 및 변경

제69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배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칙 제53조,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내규 [별표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학과장은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입학제 및 학・석사연계과정, 편입생의 지도교수 배정시기는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논문지도교수 배정절차) 학과장은 소속 학과 학위과정생의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1조(명예교수 지도교수배정)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논문의 공동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72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논문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변경사유”라 한다)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3조(논문지도교수 변경절차) 학과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4조(학위논문 지도학생 수) 전임교원의 한 학기당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학생 수는 6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장 전공 외국어시험

제75조(전공 외국어시험) ① 전공 외국어시험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되 학과장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공 외국어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은 학과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7장 영어강좌

제76조(영어강좌개설) ① 학과장은 해당 학과의 교과목 중 영어로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영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어강좌는 본교 전임교원이 담당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전임교원에게도 영어강좌의 담당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영어강좌는 해당학과 교과목으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 개설된 영어강좌의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제77조(개설절차) ①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소속 대학원 학과장에게 신청하여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영어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강좌 개설신청서
2. 영문으로 작성된 강의계획서
3. 기타 대학원장이 요청하는 서류

제78조(개설신청 기한) 영어강좌 개설신청은 학기 개시일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79조(결과보고) ① 영어강좌를 담당한 교수는 해당학기 강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0조(연구비 지원) 대학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어강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특별강좌

제81조(특별강좌개설) ① 대학원 학과장은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목으로서 학생들의 학업에 필요한 강의가 있는 경우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강좌(이하 “특별강좌”라 한다)를 개설 할 수 있다.
② 특별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학과장은 학기 개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2. 강사의 이력서 및 공적서
3. 학과장의 추천서

제82조(강좌개설 결과보고) ① 학과장은 특별강좌 개설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강의 일시·장소 및 수강인원
2. 강의 내용 요약
3. 기타 대학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83조(경비지원) ① 대학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강좌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82조 제1항의 강의개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9장 교육과정

제84조(교육과정 편성)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5조(교육과정의 개정) 대학원의 각 학과에서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6조(교육과정의 개정 절차) 각 학과는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87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각 학과의 강좌개설은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② 신규개설 교과목이 있을 경우 차기 학기 개강 3개월 전까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원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 개설강좌의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장 학적변동

제88조(휴학) ①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단,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최대 4개 학기, 통합과정은 최대 6개 학

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할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학원생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근으로 인한 휴학은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하여 특별휴학으로 인정한다.
4.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학 신청은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당해 학기에 휴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의무복무에 한함
2.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3.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89조(복학) ①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지정된 복학신청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휴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한다.

제90조(제적)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21장 계약학과 운영 및 교외지역 강좌 개설

제91조(목적) 본 대학원은 학교와 정부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제휴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 또는 채용조건형
2.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한 재직자 재교육형

제92조(교외교육장 설치) 계약학과 운영목적에 부합하고 다수의 등록학생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시설 또는 산업체 내에서 교육장을 설치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93조(설치과정 및 학과)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 개설학과는 [별표4]와 같다.

제94조(입학전형 및 지원자격) ①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한다.

②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산업체 임직원 또는 관련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제95조(과정운영) ① 본 대학원의 계약학과 석사과정 운영은 학칙, 학칙 시행세칙, 본 내규 및 「일반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에 따른다.
② 수업방법은 본교 전임교원 및 교강사가 해당지역 출강수업으로 진행하며 일부 과목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③ 해당지역 수업진행 및 학사관리를 위해 교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산학제휴 협약에 의하여 협정체결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제22장 전임교원 대학원 강좌 담당 자격

제96조(강좌 담당 자격) ① 본교 전임교원이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본 내규 [별표2]의 계열별 연구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연구실적을 확인하여 강좌 담당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7조(연구실적 대상기간) ①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기 위한 실적은 당해 학년도 1학기를 기점으로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연간 평가 대상기간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3조에 따른다.
②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1학기에 강좌 담당 자격을 갖추면, 2학기 또한 강좌 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임교원이 당해 학년도 1학기에 강좌 담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 학년도 1학기 내에 연구실적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강좌 담당 자격을 심의하여 강좌 담당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임용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의 연구실적은 1/N(N=임용년수)로 한다.

제23장 보칙

제98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의 제6항은 2009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단서조항은 201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내규 제56조에 규정한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2조는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의 종류 등

장학명	자격	지급액
총장 장학	1. 학업성적이 우수한 국내외 신입생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2. 학·석사예약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3. 통합과정 입학생중 성적우수자 4. 기타 총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학원장 장학	1.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한자 중 대학장이 추천한 자 2.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회계사·군법무관·입법사무관 1차 시험 합격자 3.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공인회계사·군법무관·입법사무관 시험 최종합격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단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은 대학원재학 중 합격한 경우에 한함)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학술지게재 장학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및 SCI(E)급, S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제 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분은 지급 제외)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학술활동장학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제1저자)한 자 중에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국제화 장학	1. 외국자매교 교환학생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자 2. 복수학위과정 및 교환학생으로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3. 해외학술교류,문화교류 등 사업에 선발된 자 4. 외국인으로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외협력 장학	1. 3급 이상의 공무원 2. 언론기관, 국공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 3.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모범장학	대학원 학생회 임원으로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교육 및 연구조교로 대학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목련장학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세부 장학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함
* 기금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은 장학금을 기탁한 국가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정한 바에 따르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내규에 따름
*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 신, 편입생(외국인포함)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조교장학 포함) 지급 시 입학금 지급 제외됨
* 수료생 및 연구등록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단, 일부 장학(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학술지게재장학, 학술활동장학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캠퍼스별로 장학예산 및 지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2]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논문지도교수	1. 인문사회계열 :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 실적 보유자(SSCI 및 A&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 최근 3년 이내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임상교수제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 3. 예체능계열・시,소설 등 창작분야 : 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 창작물(전문학술서적 포함) 등의 실적보유자 4.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별표2]를 적용함 5.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상기 실적 이상의 요건을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과는 학과에서 제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함

[별표3] 등록금의 반환기준(제5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4] 일반대학원에 설치하는 계약학과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
석사과정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공학석사